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17
----------	------

2021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황인구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 상정일자 :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인구 의원)

1. 제안이유

○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서울교육행정 발전에 기여가 크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공직사회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

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모범공무원 선발대상, 추천 및 선발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다. 모범공무원증 수여 및 수당의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 작성,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817호로 발의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을 지급하기 위한 선발 절차 및 수당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정부는 해마다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례적인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부의 연간 포상총량 기준¹⁾에

1) “정부포상 업무지침”, 행정안전부(2021.1.1.), 13쪽
포상총량제 적용 대상 : 정례포상* + 우수공무원 + 국민추천포상

따라 포상량이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교육부는 이를 다시 정원에 비례해 시·도교육청 별로 배분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무원(58,681명) 대비 매년 평균 약108명 정도(0.2%)의 소수 인원만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고 있어 서울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포상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동 조례안은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유도해 능동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최근 3년간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인원 현황

구분	총 인원(명)	교원(명)	지방공무원(명)
2019 상반기	51	35	16
2019 하반기	52	36	16
2020 상반기	55	38	17
2020 하반기	56	39	17
2021 상반기	56	39	17
2021 하반기	56	38	18

- 다만 동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의원발의로 제정했을 경우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²⁾.

* 정례포상 : 매년 또는 일정주기에 따라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포상

- 연간 포상총량 기준 : 2010년도 포상규모로 함

- 연도중에 사업·행사의 특수성·긴급성 등으로 발생하는 수시포상과 당해 연도의 여건에 따라 포상규모가 불규칙적인 퇴직포상은 별도 관리함

2) 대법원 2007.2.9., 선고 2006주45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그러나 교육감의 모범공무원 포상권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추천받은 자를 반드시 모범공무원으로 포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최종 결정권한은 여전히 교육감이 행사한다는 점³⁾(안 제2조,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의 포상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율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⁵⁾에 속하는 입법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⁶⁾ 결과 다수가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포상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모범공무원의 선발대상 범위와 추천방식, 그리고 선발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증표와 수당, 관리

3)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주53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5. <생략>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6) 입법담당관-3807,(2021.10.21.)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⁷⁾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선발대상 및 추천과 선발방식에 대한 의견(안 제3조~안 제5조)

- 안 제3조는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을 교육감 소속 6급 이하의 일반 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각 급 학교의 교사로 규정⁸⁾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상자 추천시 교육청 소속 과장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장, 그리고 학교장을 추천권자로 규정하고⁹⁾(제1항), 이를 추천권자가 공적조사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이렇게 추천된 대상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엄격한 선발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은 동 조례안이 정부의 「모범공무원 규정」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반영한

7)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6.

8)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2021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 '2021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요청', 교육부 운영지원과-23767,(2021.10.20.)

○ (선발대상) 5년 이상 재직*했고,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및 교사
* 실 근무기간으로 산정 요망

* 6급 이하 국가·지방직 공무원, 유·초·중·고 교사(교장·교감 제외)

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③ (생략)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것인바, 이를 통해 교육감이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증표 및 수당에 대한 의견(안 제6조~안 제7조)

- 안 제6조는 포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 제7조는 선발된 자에게 2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제1항)하는 한편, 지급중 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이 준용하고 있는 정부의 「모범공무원 규정」에서는 모범공무원 선발자에 대해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하고, 3년의 기간 동안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¹⁰⁾하고 있는바, 안 제6조와 안 제7조 역시 이에 따라 모범공무원증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7조는 수당의 지급기간을 정부의 「모범공무원 규정」(3년간 월 5만원씩 총 180만원)과 달리 2년(2년간 월 5만원씩 총 1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 표창의 수공기간 기준이 정부의 표창 수공기간 3년¹¹⁾과 달

10) 「모범공무원 규정」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11) 「정부포상사업무지침」, 행정안전부(2021.1.1.시행)

다.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리 1년임¹²⁾을 감안했을 때 지급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6조에서는 모범공무원증을 별지의 양식에 따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에는 별지가 누락되어 있는바,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증의 수여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그 양식에 해당하는 별지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안 제6조의 “별지의”를 삭제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12) “2021년도 교육감표창 기본계획”, 서울시교육청

-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으며, 현격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은 분야를 막론하고 1년 이내에, 기관(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교육감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17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17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별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안 제6조의 “별지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 중 ‘별지의’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모범공무원증”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6조 (증표의 수여) 교육감은 모 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u>별지의 모범공무원증</u> 을 수여한다.	제6조 (증표의 수여) 교육감은 모 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u>모범공무원증</u> 을 수여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범공무원 포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 교육감 소속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교육감 소속 각 급 학교의 교사

제4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1. 본청의 담당관·과장
2. 직속기관의 장
3.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4.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

② 추천권자가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행적과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교육행정에 대한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

2. 「모범공무원 규정」이나 이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④ 공적심의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추천권자 또는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을 받은 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증표의 수여) 교육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7조 (모범공무원 수당)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부터 전출된 때

제8조 (모범공무원에 대한 관리) 교육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